

##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 관련 실손의료비 지급 기준 변경 안내

(시행일자: 2026년 6월 18일)

동 안내는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(2024.03.21일 보도)에 따라, 무릎줄기세포 주사치료 시술 관련 실손의료비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을 사전 안내드립니다.

보험사고 발생일 기준 '26.06.18부터 무릎 줄기세포 주사치료에 대해 통원 및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될 수 있습니다.

### 1. 통원의료비 지급 기준(신의료기술 승인 내용)

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통원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.(입원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)

- ① 무릎관절증 진단명 확인 됨
- ② 연골 결손 \* KL 2~3등급, 또는 \*\* ICRS 3~4등급
- ③ 타수술 병행하지 않고 주사로만 단독 투여

\*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음

\* (KL등급) 무릎 골관절염의 정도를 평가하는 분류체계(0~4등급)로서 관절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지는 증상은 2~3등급에 해당

\*\* (ICRS 등급) 국제연골재생협회(ICRS)의 연골 손상 정도에 대한 분류체계(0~4등급)로서 연골이 50% 이상 손상된 경우는 3~4등급에 해당

### 2. 입원의료비 지급 기준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,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입원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.

- ① 위 "통원의료비 지급 기준"을 충족하는 경우
- ②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의학적 사유가 주치의 소견으로 확인되는 경우

#### (참고) <‘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’ 개요>

- **사용목적:** 무릎 관절의 통증 완화 및 기능 개선
- **사용대상:** 중간 수준 무릎 골관절염 환자(ICRS 3~4 등급 또는 KL 2~3 등급)
- **시술방법:** 환자에게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원심 분리하고 농축된 골수 줄기세포를 무릎 관절강내 주사

※ 통상 시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골수 흡인 농축물 준비 및 골수 흡인 농축물 주입 등 약 1시간 내외

위 수술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수술 필요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콜센터(1588-9898)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 및 제출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## 백내장 수술 관련 실손의료비 지급 기준 변경 안내

(시행일자: 2026년 6월 18일)

동 안내는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(2025.03.10일 보도)에 따라, **백내장 수술** 관련 실손의료비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을 사전 안내드립니다.

**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.**

\* 대법원 판례(대법원 2025.01.23 선고 2024다305643 판결 등)에 따르면, 백내장 수술 후 입원보험금을 불인정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AIA생명 보험회사는 **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**하여 하기와 같이 통원 및 입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### 1. 통원의료비 지급 기준

아래 항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통원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.

- ① 진단명(백내장 상병코드) 확인
- ② 수술 적응증 : 3급 이상의 수정체 혼탁도 확인
  - ※ 단, 시력교정 목적(다초점 렌즈 등)의 수술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
### 2. 입원의료비 지급 기준

다음 조건을 **모두** 충족하는 경우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어, 입원의료비로 보상이 가능합니다.

- ① 위 "통원의료비 지급 기준"을 충족하는 경우
- ② 실제로 입원이 필요한 의학적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

#### [입원 필요성 인정 사례]

- ▶ 고혈압, 당뇨 등 내과적 기저질환자로, 일반적인 경우보다 수술 및 마취 자체에 대한 심각한 합병증이 우려되어 특별히 입원 하에 경과 관찰이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- ▶ 수술 또는 마취로 인한 합병증, 부작용이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
- ▶ 백내장 수술과 함께 다른 안과적 수술(예: 망막 수술 등)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

- 비급여 의료비 항목이 포함된 경우에는 진단 내용 및 입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**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**
-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단순 합병증만 확인될 경우, **입원 필요성 인정이 불가**할 수 있습니다.

위 수술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수술 필요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콜센터(1588-9898)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**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 및 제출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**

## 신경성형술(PEN) 관련 실손의료비 지급 기준 변경 안내

(시행일자: 2026년 6월 18일)

동 안내는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(2025.07.16일 보도)에 따라, **신경성형술(PEN)** 시술 관련 실손의료비 보험금 심사기준의 주요 변경을 사전 안내드립니다.

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사례지침 등을 통해 신경성형술에 대한 18개 사례를 공시\*하면서 (\*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-264호('22.11.7.)) **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(통상 '신경성형술')** 시행 후 합병증 발생 등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**입원보험금을 불인정**한 바 있습니다.

이에 따라, AIA생명 보험회사는 **경피적경막외강신경성형술 관련 보험금 심사기준을 변경**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사례 지침 및 사례 상 **입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입원 보험금을 지급**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**보험사고 발생일 기준 '26.06.18부터 경피적경막외강신경 성형술에 대해 입원필요성이 인정**되기 어려운 경우 **입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통원보험금(20만원 이내)만 지급**될 수 있습니다.

따라서, **고객님께서 예상하신 보험금 지급액과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**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### [ 보건당국 판단 ]

□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사례지침 등을 통해 신경성형술 시술에 대한 18개 사례를 공시\*하면서 (\*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사례지침 공고 제2022-264호('22.11.7.))

◦ **해당 신경성형술 사례들에 대해, 입원하여 관찰이 필요한 정도의 상태변화나 일상생활의 제한 등이 확인되지 않아 입원료를 불인정\***

\* 입원료는 「입원료 일반원칙(고시 제2021-4호)」에 따라,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 인정

※ 법원도 병원에서의 입원 여부는 입원실 체류시간(6시간 이상) 및 환자의 증상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(대법원 2004도6557, 2022다216749, 2024다305643 등)

위 수술에 대한 기본 정보 및 수술 필요성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당사 콜센터(**1588-9898**)로 연락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.

**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 및 제출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**